

※ 본 투자자문계약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투자자문 기간형 계약서

_____(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오에프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고객과 회사 간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증권 및 파생상품
- ②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투자 대상 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 대상 자산

제3조(투자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대상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에 관한 투자자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자산 분석 및 가치 판단에 관한 사항
4. 투자자문자산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그 수량, 가격, 방법, 시기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제4조(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방법)

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자문자산액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별지]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조(투자자문의 제공방법 및 시기)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회사는 유무선 통신,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SMS) 전용 어플리케이션[에브리톡] 등의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구성이나 규모 및 고객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투자자문을 회사는 유무선 통신,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SMS) 전용 어플리케이션[에브리톡] 등의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③ 투자자문은 계약기간 완료 전까지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시점에 투자자문을 제공합니다.

제7조(투자자문 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3. 고객의 자산상태, 투자목적 및 위험수용 정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4. 일관성 있는 투자자문 추구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건전한 운용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 ② 회사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전 투자자문 상담 및 투자 권유: 고객이 회사에 투자자문서비스를 요청하면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 목적, 투자자문자산 규모 등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회사의 투자자문계획을 설명하고, 계약체결 전에 고객에게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를 교부한다.

2. 투자자문계약 체결: 고객과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작성하여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서를 교부한다.
3. 투자자문업무 수행: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내용과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4. 투자자문보고서 제공: 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한 후 필요시 투자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
5. 투자자문계약 종료: 투자자문계약의 목적 달성,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고객의 요청 등의 사유에 의하여 투자자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종료한다.

제8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투자의 성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투자는 고객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투자자문으로 발생한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과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9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만약 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을 중단한다.

제10조(투자자문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다.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이하 "투자자문 수수료")로 투자자문계약 체결 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고객은 [별지]에 기재된 '수수료 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고객은 투자자문 수수료를 투자자문계약 체결 당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당일까지 투자자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그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은 양 당사자간 별도 사전 합의에 따라 투자자문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에 기재한다.

② 본 투자자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사 및 감정평가 등 제3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비용은 투자자문 수수료와는 별도로 고객이 부담한다.

제11조(투자자문담당자)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신청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변경될 투자자문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문담당자의 사망·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5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중도해지 투자자문 수수료 환급 기준'에 따라 기수령한 투자자문 수수료 중 잔여분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환급한다.

제12조(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세부 내용은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7.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과 같다.

제13조(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는 경우 투자자문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투자자문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천재지변,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고객의 의무 및 책임)

- ① 고객은 투자자문자산의 변동, [별지]에 기재된 주소·연락처·이메일 주소 및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 ① 본 계약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과 회사는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고객과 회사가 본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을 기존 투자자문계약서에 기재하여 날인한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문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17조(청약의 철회 등)

① 고객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가 가능한 투자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계약서류를 받은 날보다 투자자문서비스가 늦게 제공된 경우에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이 시작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상 정해진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철회등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고객에게 기수령한 투자자문 수수료를 반환한다.

1. 회사는 고객에게 기수령한 투자자문 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 단,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와 고객은 [별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의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문 수수료를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고객 또는 회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신청 등 기타 고객 또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계약의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는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 성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1조(통지)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일체의 통지는 사전 합의에 따라 [별지]에서 정한 '통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 방법을 달리 정하여 회사에 사전에 고지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새롭게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별지]의 '통지 방법'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회사의 통지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의의가 있는 사항은 관련 법규, 상관례 또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석, 이행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것이 본 계약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관련법규 등의 준용)

본 계약은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었으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제24조(특약사항)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별지]의 특약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고객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0월 00일

“고객”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회사”

상 호 : 주식회사 오에프투자자문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33길 5-3 디에이팩스빌딩 2층

대표이사 : 김 명 속 (인)



[별지] 본 계약의 특약사항

저희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 계약의 청약철회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을 청약철회 및 해제할 수 없으며, 본 투자자문계약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금융투자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계약서임을 고지드립니다.

1. 투자자문계약 상품명 : (오에프_주식플랜)
2. 계약기간 : 2024년 00월 00일부터 ~ 2024년 00월 00일까지 (0개월)
3. 투자자문 수수료 : 0,000,000 원 (부가세 포함) (선취)
4. 수수료 입금 계좌 : 기업은행 089-093441007-04-018 (예금주: 오에프투자자문)
5. 투자자문담당자
 - 성 명 : 이태엽
 - 주요 경력
 - ▶세인트존스(뉴욕)졸업 現오에프투자자문 자문역 한국투자증권 前시티드투자그룹 대표
 - 주요 자격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 권유 자문인력
 - ▶펀드투자 권유 자문인력
 -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 ▶금융투자협회 등록

